

『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박세진, 강승수, 김재상, 김태근
안주찬, 한성희, 허 복 (7명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 세 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 연령제한을 개정하여 진료 및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확보로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병원조직 운영의 현실화 근거 마련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의료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연령제한 규정 삭제로 수탁자 선정의 폭을 확대하여 연륜과 전문성을 가진 병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